

# 2019년 제2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생산등록번호	산학연구기획부-277 6	선임	팀장	산학연구 기획부장	산학협력 부단장	산학협력 단장
등록일						2019.05. 27.
결재일		최진우	오상준	김영만	조성준	윤경구
공개구분	공개	협조자				

차 수	2019년 제2차	참석인원	14명
일시	2019.5.22.(수) 10:30	참석자	위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산학협력부 단장, 연구협력단장, 교육지원처장, 삼척 산학협력단장, 김태인 위원, 김대현 위원, 주진우 위원, 김기동 위원, 박태현 위원, 윤장원 위원, 조희숙 위원
장소	평의원회 회의실 (춘천-삼척 화상회의)		
배석자	산학연구기획부장, 산학연구지원부장, 총무인사팀장, 재무회계팀장, 연구진 흥팀장, 연구지원2팀장, 최진우 선임, 김덕환 주임	불참자	기획처장, 사무국장, 김승희 위원, 박영철 위원, 이득찬 위원, 최미정 위원
안건	<input type="checkbox"/> 심의안건 1.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2.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세칙 일부개정 세칙안 3. 강원대학교 국책사업 및 기타 연구개발사업 대응자금 지원 지침 일부개정 지침안 4. 2018년 산학협력단 결산 보고		

<b>발언요지</b>
<input type="checkbox"/> <b>개회선언(위원장)</b> ◦ 2019년 제2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함.(10:30)
<input type="checkbox"/> <b>개회선언(위원장) 및 성원보고(총무인사팀장)</b> ◦ 정관 제13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인 위원 20명 중 14명이 참석하여 성

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 □ 심의 안건

### <제1호 의안>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 총무인사팀장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에 대하여 설명함.
- 위 원 장 : 제1호 의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 위 원 장 :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제1호 의안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음.
- 전체 위원 : 동의함.
- 위 원 장 : 제1호 의안이 원안 가결됨.

### <제2호 의안>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세칙 일부개정 세칙안

- 총무인사팀장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세칙 일부개정 세칙안’에 대하여 설명함.
- 위 원 장 : 부연설명함. 산학협력단이 연구정책과 창업기획을 총괄하라는 대학 요구사항이 있어 연구정책팀과 창업기획팀을 신설하고자 함. K-CUBE에 기업유치 필요성으로 인해 기업협업센터(ICC)를 신설하고자 함.
- 위 원 장 : 제2호 의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 윤장원 위원 : 팀신설에 따른 인원 총원시 예산총원 계획이 궁금함.
- 위 원 장 : 연구정책팀은 본부에서 파견한 팀장이 겸직하며, 팀원의 경우 기존의 산학사업전략실 직원을 인사발령하여 자체 조정함. 기업협업센터는 신규직원 1명 총원이 필요함. 창업기획팀은 현재 강원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직원이 겸직하고 있으며, 일부 청년TLO육성사업 인력을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함. 향후 1명 내외 총원과 인건비가 추가될 예정임.
- 박태현 위원 : 연구진흥위원회가 무엇이며, 연구진흥팀이 아닌 연구정책팀에서 관리하게 된 이유가 궁금함.
- 총무인사팀장 : 연구진흥위원회란 대학-산학협력단의 연구정책, 연구진흥을 추진할 목적으로 결합한 협의체임. 위원회 명칭을 연구정책위원회로 검토 중이며, 이 경우 규정 재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 위 원 장 : 연구진흥팀은 일반적인 연구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연구정책팀은 새로운 정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발굴 목적으로 운영됨.

- 위 원 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2호 의안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세칙 일부개정 세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음.
- 전체 위원 : 동의함.
- 위 원 장 : 제2호 의안이 원안 가결됨.

### **〈제3호 의안〉 강원대학교 국책사업 및 기타 연구개발사업 대응자금 지원 지침 일부개정 지침안**

- 연구진흥팀장 : ‘강원대학교 국책사업 및 기타 연구개발사업 대응자금 지원 지침 일부개정 지침안’에 대하여 설명함.
- 위 원 장 : 제3호 의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 위 원 장 : 대응자금은 국책사업 제안서 제출마감 7일전까지 산학협력단장에게 지원 요청하여야 하나, 사업신청서 마감 1일전에 대응자금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대응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때문에 대응자금 지원 요청 시 이를 대학 기여 및 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심의·관리하기 위한 대응자금 심의위원회 신설 및 대응자금 지원 요청을 사업신청서 제출마감 14일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그리고 대응자금 지원 요청건에 대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대응자금 심의위원회는 교육연구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이상 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함.
- 윤장원 위원 : 3조 2항의 대응자금 지원범위를 연구비 총액 5% 내외라고 명시된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한 이유가 궁금함.
- 연구진흥팀장 : 지원범위도 대응자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토록 하기 위함.
- 위 원 장 : 대응자금 지원이 필수조건이 아니더라도 대학 발전 기여 등 사업수주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응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하게 되었음.
- 박태현 위원 : 총장과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권한을 심의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함. 또한 위원회의 역할이 심의가 아닌 심의의결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합의적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 수행이 적절함.
- 위 원 장 : 심의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대체하는 것이 맞음. 심의 의결 의견에 동의하며 수정하도록 하겠음.

- 김기동 위원 : 사업신청 마감일 14일전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부분이 적절하게 지켜질 수 있을지 궁금함.
- 위 원 장 : 규정시행 후 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자들의 노력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학생처장 : 현재는 사업마감 전 7일 이내에도 대응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경우들이 많음. 이를 방지하고자 신청기한을 14일로 규정하고자 함.
- 교무처장 : 대응자금 지원에 대해 총장, 산학협력단장이 부담이 큼. 시의적절하고 투명한 대응자금 지원을 위한 규정개정 목적이 있다고 생각함.
- 위 원 장 : 대응자금 지원이 필수인 경우 공간문제가 없다면 위원회 심의없이 지원하며, 미필수인 경우 사업의 필요성, 수주 가능성에 따라 심의를 통해 지원하고자 함.
- 주진우 위원 : 대응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서식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함.
- 연구진흥팀장 : 지침 전문에 산학협력단 자체서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원기관별 대응자금 지원 협약신청서식이 있음.
- 김기동 위원 : 형평성과 지원 안정성을 위해 대략적인 기준을 수립해 놓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함.
- 학생처장 : 1대학 1과제 지원 등의 문제로 인해 지원기준 수립은 어려울 수 있음.
- 위 원 장 : 지원기준 수립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음.
- 위 원 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호 의안 ‘강원대학교 국책사업 및 기타 연구개발사업 대응자금 지원 지침 일부개정 지침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도록 하겠음.
- 전체 위원 : 동의함.
- 위 원 장 : 제3호 의안이 수정 가결됨.

#### **<제4호 의안> 2018년 산학협력단 결산 보고**

- 재무회계팀장 : ‘2018년 산학협력단 결산 보고’에 대하여 설명함.
- 위 원 장 : 제4호 의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 위 원 장 :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제4호 의안 ‘2018년 산학협력단 결산 보고’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음.

- 전체 위원 : 동의함.
- 위 원 장 : 제4호 의안이 원안 가결됨.

**□ 폐회선언(위원장)**

- 2019년 제2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폐회를 선언함(11:40)